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5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고,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타화계 전입금이 증액됨에 따라 2023년 수입·지출 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 및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128,905백만원(당초계획 대비 41,919백만원 증가)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장관항목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수입합계	86,986	128,905	41,919	48.2
세외수입	1,800	1,800	-	-
사업수입	1,000	1,000	-	-
이자수입	800	800	-	-
보전수입등내부거래	85,186	127,105	41,919	49.2
예치금회수	45,186	57,105	11,919	26.4
전입금	40,000	70,000	30,000	75.0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출합계	86,986	128,905	41,919	48.2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	53,622	83,622	30,000	55.9
서울Vision2030펀드 신규 조성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	53,662	83,622	30,000	55.9
4차산업혁명펀드 출자	4,000	4,000	-	-
스마트시티펀드 출자	6,000	6,000	-	-
창업지원펀드 출자	12,000	16,000	4,000	33.3
재도전지원펀드 출자	2,500	2,500	-	-
서울바이오펀드 출자	7,500	11,500	4,000	53.3
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	6,000	10,000	4,000	66.7
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	422	422	-	-
스케일업펀드 출자	8,000	18,000	10,000	125.0
첫걸음동행펀드 출자	3,000	7,000	4,000	133.3
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	3,000	7,000	4,000	133.3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	1,200	1,200	-	-
재무활동(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)	33,334	45,253	11,919	35.8
내부거래지출	5,513	5,513	-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(이자) 상환	1,593	1,593	-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(원금) 상환	3,920	3,920	-	-
보전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	27,821	39,740	11,919	42.8
예치금	27,821	39,740	11,919	42.8
행정운영경비(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)	30	30	-	-
기본경비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	30	30	-	-
기본경비	30	30	-	-

Ⅲ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-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계획중 ①예치금 회수에 당초 수입계획(451억 8,600만원)보다 119억 1,900만원을 증액하고, 일반회계로부터 진출된 ②전입금을 당초 수입계획(400억원)보다 300억원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, 동계정의 당초 수입계획(869억 8,600만원)보다 419억 1,900만원 증액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
-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정책사업인 ①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을 당초 계획(536억 2,200만원)보다 55.9%, 300억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, 정책사업인 ②재무활동(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)을 당초 계획(333억 3,400만원)보다 35.8%, 119억 1,9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①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, ②재무활동(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) 모두 당초 기금운용계획 보다 20%이상 증액되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지출계획 변경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 = B - A)	증 감 륜 (D = C / A)
지 출 합 계	86,986	128,905	41,919	48.2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	53,622	83,622	30,000	55.9
서울Vision2030펀드 신규조성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	53,622	83,622	30,000	55.9
4 차 산 업 혁 명 펀 드 출 자	4,000	4,000	-	-
스 마 트 시 티 펀 드 출 자	6,000	6,000	-	-
창 업 지 원 펀 드 출 자	12,000	16,000	4,000	33.3
재 도 전 지 원 펀 드 출 자	2,500	2,500	-	-
서 울 바 이 오 펀 드 출 자	7,500	11,500	4,000	53.3
문 화 콘 텐 츠 산 업 펀 드 출 자	6,000	10,000	4,000	66.7
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	422	422	-	-
스 케 일 업 펀 드 출 자	8,000	18,000	10,000	125.0
첫 걸 음 동 행 펀 드 출 자	3,000	7,000	4,000	133.3
디 지 털 대 전 환 펀 드 출 자	3,000	7,000	4,000	133.3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	1,200	1,200	-	-
재 무 활 동	33,334	45,253	11,919	35.8
내 부 거 래 지 출 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	5,513	5,513	-	-
보 전 지 출 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	27,821	39,740	11,919	42.8
예 치 금	27,821	39,740	11,919	42.8
행 정 운 영 경 비	30	30	-	-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지출계획, 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-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(119억 1,900만원)으로 적립하여 수·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
 - 정책사업인 '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'에 300억원을 증액 계획하여 **창업지원펀드 출자(40억원), 서울바이오펀드 출자(40억원), 문화콘텐츠 산업펀드 출자(40억원), 스케일업펀드 출자(100억원), 첫걸음동행펀드 출자(40억원),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(40억원)**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 - 다만, 소요예산중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³⁾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출자금 편성과 관련된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,⁴⁾
 - 동 지출계획 변경안중 편성요청된 출자금의 경우, 소관 상임위원회의 출자동의안 승인여부와 연동하여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2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4조(기금의 조성)

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
3. 보조금·차입금·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3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4) ① 의안번호 : 900

② 안건명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③ 안건제출 : 2023. 5.30